파주시공고 제 2020 - 2145 호

# 파주시 읍·면·동·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파주시 읍·면·동·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「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0월 20일

**파 주 시 장**

**□ 자치법규명 : 파주시 읍·면·동·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**

## □ 개정이유

○ 판문점을 포함한 DMZ주변 미복구 토지의 복구 등록에 따라 파주시 행정구역으로 포함하고자 함.

## □ 주요골자

○ 불필요한 조문 삭제 및 수정(안 제2조)

○ 별표 내 장단면 덕산리, 진서면 선적리 신설(안 별표)

| 읍면동 | 현 행 | 조 정 | 비 고 |
|---|---|---|---|
| 장단면 | 노상리 일원 | 노상리 일원 | |
| | 노하리 일원 | 노하리 일원 | |
| | 거곡리 일원 | 거곡리 일원 | |
| | 도라산리 일원 | 도라산리 일원 | |
| | 석곶리 일원 | 석곶리 일원 | |
| | 강정리 일원 | 강정리 일원 | |
| | 동장리 일원 | 동장리 일원 | |
| | 정동리 일원 | 정동리 일원 | |
| | - | 덕산리 일원 | |
| 진서면 | 금릉리 일원 | 금릉리 일원 | |
| | 어용리 일원 | 어용리 일원 | |
| | - | 선적리 일원 | |

**□ 개 정 조 례 안** : 별첨

## 5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일 : 2020년 11월 9일까지(20일간)

나. 제출방법 : 서면·우편·FAX 등

- 파주시 홈페이지(http://www.paju.go.kr) '입법예고'에 전문 게시
- 자치법규정보시스템(http://www.elis.go.kr) '입법예고'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

다. 기재내용 : 성명·주소·생년월일·연락전화번호·의견

라. 제출기관 : 파주시청(자치행정과)

○ 주 소 :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자치행정과 (우 10932)

○ 연락처 : 031-940-4962 / FAX 031-940-4109 / nice5587@korea.kr

#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**자치법규명** : 파주시 읍·면·동·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　　소 :

○ 생 년 월 일 :

○ 전 화 번 호 :

| 개정안 내용 | 의　　견 | 비　고 |
|---|---|---|
| | | |